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본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폭력으로 통칭)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및 대응방법을 명시하여 원활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성폭력 및 성희롱의 정의

-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1. 공통점

- 1) 주로 지위 등을 이용한 남녀 불균형한 권력관계와 퇴폐 및 향락적인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점.
-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에 의해 발생하는 점.
- 3)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며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

2. 차이점

- 1)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94. 1. 5 제정)에 그 유형(형법, 특별법)이 열거되어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 2) 성희롱은 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써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I. 요양보호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으므로 재빨리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요양보호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1)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2)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3)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4)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5)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 6)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2.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성폭력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기 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다음의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된다.)

Ⅱ. 수급자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1. 수급자 성희롱의 정의

“수급자 성희롱”이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서비스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행 위 자	피 해 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주로 여성이 대상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로 남녀수급자 모두 해당되며, 수급자의 가족(동거 어르신 및 장애가족)도 포함된다.

3. 성희롱의 유형

- 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② 어떠한 경우에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③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회음부를 노출시켜 놓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 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다음의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된다.)

Ⅲ.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지침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 ① 자신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다.
- ②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기관의 규칙에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 ③ 기관 내에 성폭력 및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폭력 및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 ⑤ 기관에 대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 ① 음담패설을 삼가고,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 ② 직원 및 급여제공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④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 및 급여제공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 ⑤ 직원 및 급여제공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2.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 직원의 지침

- ① 수급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평소 존칭을 사용한다.
- ②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는다.
- ③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 ⑤ 수급자의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⑥ 수급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 서는 안된다.

2) 급여제공직원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포함)의 지침

- ① 급여제공직원에 대해 음담패설을 삼가고, 집안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 ② 급여제공직원에게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 안마나 애무 등의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급여제공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④ 급여제공직원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사적인 행위 및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⑤ 급여제공직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주위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연락하여 해결한다.

3.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지침

- 1) 성폭력(성희롱) 피해 어르신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고, 어르신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어르신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 어르신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3)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 관련법규

- ☞ 누구든지 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호)

IV.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제2항>

2.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행 위 자	피 해 자
사업주나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 근로자, 하급자가 해당 된다. ※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 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 모두 해당되며,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된다.

3.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1)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이나 밖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된다.
- 2) 예를 들어 출장중인 차안이나 업무와 관련 있는 전체 회식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4.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2) 어떠한 경우에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

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직장내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기 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다음의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된다.)

5.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 1)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 2)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 경우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지 성희롱 행위자의 성희롱 의사 여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 4) 가령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 하여도 상대방이 굴욕적이나 공격적인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피해자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
- 5)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예시 - 직장내 성희롱의 두가지 유형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건형 성희롱」과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환경형 성희롱」이 그 두 가지이다.

1) 조건형 성희롱

- ①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 ② 출장중에 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것.
- ③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사업주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

2) 환경형 성희롱

- ①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
- ② 여성 근로자에 관계되는 성적인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여성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 ③ 직장상사가 음란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여 여성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

7.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1)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plik을 기반으로 한 교제.
 - ① 그 수단이 성적인 언동이라도 두사람의 동의에 의한 상호보완적인 것이기 때문.
 - ②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것.
 - ③ 직장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지만 성적 언동이 아니기 때문.

■ 사업주, 직장내 성희롱 책임 있다.

1.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이를 위반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

3. 예방교육의 실시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 1) 교육형식
 -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를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나 부서장에 의한 교육도 가능하다.
 - 아울러,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 게시판,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교육 내용
 - 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 ③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④ 직장내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⑤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 ① 사업주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의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된 사업의 사업주는 아래의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치

- 1)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기구나 절차를 마련한다.
- 2) 기존의 고충처리기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고충처리기구의 운영시 가능한 여성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① 사업주는 성희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소속직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성희롱 담당 상담요원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상담요원등 담당자)는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를하고, 특히 조사과정 등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된다.
- 4)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 종료시 관계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적정 기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사업주는 사건처리 이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 1)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 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징계조치 및 절차에 대해사전에 취업규칙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내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

6. 사업주가 성희롱 여부 판단이나 관련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 1)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2) 지원을 요청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자체적 또는 고용평등위원회(공익회의)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거나 분쟁 해결에 조력한다.

7.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법 제8조의2제2항)

- 1)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 2)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성적언동을 조건 또는 이유로 하여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8. 사용자 단체의 역할

사용자 단체는 영세중소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사내지침, 고충해결 절차나 기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조언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

-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예시 -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 1) 성희롱의 접수
 - ① 기관내의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나 인사부서, 노무담당 부서에서 한다.
- 2) 상담과 조사
 - ① 사건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성희롱 용의자로부터 성희롱 사건 전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기록한다.
 - ③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④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 성희롱 용의자와의 대질 대신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 ⑤ 피해자와 증인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⑥ 공식조사된 결과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3) 확인 및 징계 조치

- ①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경고로써 성희롱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4) 결과 통지

- ① 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야한다.

5) 사후 재발 방지

- ①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후에도 사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

1. 사내에서 근로자가 취할 사항

-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2)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3) 이 경우 행위자는 성희롱 중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4)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 5)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성희롱을 원하지 않으며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그 행위자에게 보낸다.
- 6)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 7)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두어 이후 해결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한다.
- 8)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 9)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급자, 또는 행위자의 상급자,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 10)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하여 해결한다.
- 11)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2. 법적 권리구제 방법

1) 행정기관(노동부)을 통한 구제 신청

- ①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분쟁해결을 지원, 요청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권리구제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 ①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민사 소송 제기

- ①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 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목적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 정의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물건이나 가구 등에 의해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대상자의 감염여부를 관찰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면서 돌보아야 한다.

■ 감염병 및 환자의 개념

1. 감염병(infectious disease)
 - 사람에게 침투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
2.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 혹은 transmissible disease)
 -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 혹은 동물 내에서 증식 가능한 병원체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전파되는 질병
3. 감염(infection)
 - 병원체가 숙주 내에서 분열 증식하고 있는 상태. 감염이 되면 숙주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며 그 결과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면역반응이라는 현상으로 표현
4. 면역(immunity)
 - 어떤 특정의 병원체 또는 독소에 대해 개체가 강한 방어능력을 갖는 상태로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인성 및 내인성의 이물질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아생체의 개체성과 항상성을 유지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전
5. 환자(patient)
 - 해당 감염병의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며, 검사 방법에 의해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6. 의사환자
 - 임상적, 역학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검사로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7.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가 분리 동정된 자

■ 감염병의 발생인자

감염병의 발생에는 병원체, 환경 및 숙주의 3개 질병요인이 관여한다. 이들 요인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상태가 된다. 즉 숙주(사람)가 건강한 경우라도 침입한 병원체의 병독성이 강하면 발병을 하게되며, 반면 병독성이 낮은 병원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저항력이 낮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1. 병원체 요인

- 세균, 바이러스, 진균, 리케치아, 기생충 등 미생물의 숙주 아닌 옥외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 증식 능력, 숙주로의 침입 및 감염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에 따라 감염이 결정된다.

2. 숙주 요인

-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방어기전, 생물학적 요인(연령, 성별, 종족), 행태 요인 (생 활습관, 직업, 개인위생), 체질적인 요인(선천적/후천적 면역, 영양 상태) 등이 감염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3. 환경 요인

- 생물학적 환경(인간, 동물, 토양, 파리, 모기 등), 물리화학적 환경(소음, 대기오염), 사회적 환경(의료 수준, 공해 대책, 안전) 등이 있다.

■ 감염병 발생 대응 순서

1. 1단계

- 감염 증상(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어르신을 확인한다.

2. 2단계

- 감염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 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한다.

3. 3단계

-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한다.
- 전파경로별 격리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 시행한다.
-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한다.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한다.

4. 4단계

- 감염 어르신을 병원 이송 등 조치한다.
-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소독을 시행한다.

■ 감염병의 종류

1. [폐렴]

폐렴은 환자의 50% 이상,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해당할 정도로 어르신에게 매우 흔하고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폐렴 발생을 줄이고 동반되는 후유증이나 사망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1. 위험 요인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 구강과 인두의 감염균(그람음성 간균) 정착
-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2. 대처법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어르신에게도 교육을 한다.

3. 호흡기 에티켓

-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호흡기계 감염 증상(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한다.
 - (a)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b)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c)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 (d)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e)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2. [결핵]

1. 증상 및 특징

- 전파경로 :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비말핵을 통해 전파됨
- 임상증상 : 전신 감염증으로 주 감염부위에 따라 임상증상이 매우 다양함
 - 일반적인 공통 증상 :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
 - 폐결핵 :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을 보임
 - 폐외 결핵(흉막, 임파선, 복부, 비뇨기, 피부, 관절, 골, 뇌막염 등)
- 결핵성 뇌막염-두통, 오심, 구토, 의식 혼미
- 결핵성 늑막염-흉통, 호흡곤란 등

2. 치료

- 항결핵제 치료
 -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자의로 약을 중단하여서는 안 되며 최소 6개월 이상 복용 정확한 복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질환의 악화, 약제 내성균 발생으로 치료 곤란

3. 예방

- 예방접종 : 생후 4주 내 BCG접종
- 개인위생 수칙 준수, 충분한 영양섭취와 수면으로 개인 면역력 유지
-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

3. [노로바이러스]

1. 위험요인

-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수를 섭취할 때
- 감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졌을 때
- 감염된 어르신을 간호할 때
- 감염된 어르신과 식품,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 감염된 어르신의 구토물이나 채변을 만졌을 때

2. 잠복기 및 증상

- 잠복기는 24~48시간이다.
- 주 증상은 속 울렁거림,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증세 등이다.

3. 대처법

- 확진 시 접촉주의(contract precaution)를 시행하고 퇴소 조치한다.
- 식중독 발생 시 급식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신속히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식품위생법의 식중독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다.
- 전문 소독업체에 연락하여 시설 전체 소독을 실시한다.
- 칼, 도마, 행주 등은 85°C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사용한다.
- 바닥, 조리대 등은 물과 염소계 소독제(200ppm)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한다.
-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분리수거하여 열탕 소독하고 분리·세탁한다.
-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 있는 화장실 손잡이 등을 세심하게 소독한다.
- 식중독 전파 예방을 위해 특별병실 내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 오물이나 변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비닐봉투에 넣은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200ppm)을 스며들 정도로 분무하고 밀봉하여 폐기한다.
- 린넨류는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에 넣어 분리하여 세탁실로 내린다.
- 감염된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따로 배치하여 다른 어르신에게 전파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4. 감염에 대한 위험인자 조절

- 가열·조리한 음식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섭취한다.
- 어패류 등은 85°C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한다.
-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한다.
- 종사자 및 어르신의 손 씻기를 철저히 한다.

4. [B형 간염]

1. 일반적 특성

-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감염된 경우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2. 감염 경로

-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한 감염
-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시 감염
- B형 간염 대상자에게 침습적으로 사용한 바늘에 의한 찔림

3. 대처법

- B형 간염 어르신에게 사용한 바늘에 찔린 종사자는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알린다.
- 바늘에 찔린 종사자는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B형 간염 검사를 한다.
- 간염 검사 결과를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감염에 대한 위험인자 조절

- B형 간염 어르신 접촉 전, 후 손 위생을 실시한다.
- B형 간염 어르신은 차트에 표시해 두고 모든 종사자들이 주의 할 수 있게 한다.
- B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파하므로 격리조치는 하지 않는다.
- B형 간염 어르신을 진찰하거나 간호할 때 장갑을 착용할 필요 없다.
- 침습성 시술 중 간염 어르신의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5.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은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임. 최근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MERS란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는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임.

1. 위험 요인

- 잠복기 : 5일(2~14일) 이내 증상 발생
- 증상 및 징후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급성 신부전 등
- 감염경로 : 명확한 감염원.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낙타를 통한 감염 가능성 보고
- 만성질환 혹은 면역기능 저하자 예후 불량
 - 따라서 노인성질환으로 입소해 있는 입소시설(주야간, 단기보호 포함)에서는 메르스 발생시 신속한 예방조치 및 수급자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대처법

- 여행 중 농장 및 동물과의 접촉(특히 낙타)을 삼가한다.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낙타유((Camel milk)의 섭취를 삼가한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한다.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한다.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은 피한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다.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3. 예방법

- 위생관리 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 소독제를 사용
 -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병원 방문
- 종사자 감염 예방 수칙
 - 환자 진료 전·후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 소독제를 사용
 - 환자를 진료 또는 간호하는 의료진은 반드시 개인 보호장비 착용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 요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
 -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 또는 격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

6.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A, B, C)에 의한 호흡기 감염

1. 위험 요인

- 전파경로 :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이며, 전염력은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 발병 후 약 5일 정도까지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 증상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 합병증 :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

2. 대처법

- 개인위생 및 면역증강
 - 철저한 손 씻기, 구강청결 유지
 - 충분한 수면, 영양섭취 유의
- 예방접종
 - 매년 10월 ~ 12월 유행 이전에 접종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필히 접종

3. 예방법

- 손을 자주 씻고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물 섭취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다. 더불어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된다.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국가등을 방문한 이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중 두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4. 감염에 대한 위험인자 조절

- 재가 수급자 주의사항
 - 증상 발현 후 7일간은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손은 비누로 자주 씻는다.
 - 당뇨, 심장병, 호흡기 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항바이러스제 복용 여부, 다른 치료 조치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방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 재가 수급자 가족 구성원 주의사항
 - 수급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손을 비누로 깨끗이 자주 씻으며, 개인별 수건을 사용한다.
 - 공동 이용 공간은 자주 환기시키고, 물품 등은 소독제 등으로 깨끗이 닦는다.
 -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을 금하고, 천 마스크는 세탁하여 사용한다.
 - 수급자가 사용한 일회용품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수급자가 이용한 물건을 만진 후에는 즉시 손을 씻는다.

7. [풍진]

1. 증상 및 특징

- 전파경로 : 비말감염 등의 공기매개감염, 직접 접촉, 또는 태아의 경우 태반을 통해서 어머니에게서 수직감염으로 전파됨
- 잠복기 : 12~23일(평균 14일)
- 임상증상
 - 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며 불현성 감염도 흔함
 - 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커짐

- 발진이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날에는 홍역의 발진(홍반성구진성발진)과 비슷하며, 둘째 날에는 성홍열의 발진(미만성선홍색의 작은 구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에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 발열, 피로, 결막염, 비염 등

2. 치료

- 대증요법
 - 임신부가 풍진에 노출 시 즉시 항체를 검사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예방

- 예방접종 : MMR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시행
- 가임기 여성은 이전에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임신 전에 미리 풍진 단독백신이나 MMR접종을 하도록 하고 접종 후 한달간은 임신을 피하도록 함
-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충분한 영양섭취와 수면으로 개인 면역력 유지

8. [콜레라]

1. 증상 및 특징

- 병원소 : 사람
- 전파경로 : 주로 어패류 등의 식품매개로 전파, 드물게 환자 분비물 접촉감염
- 잠복기 : 6시간~5일(대개 24시간 내 증상발현)
- 임상증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며 구토 동반,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며, 무증상 감염이 더 흔함

2. 치료

- 보존적 치료로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과 전해질 공급하며 항생제를 투여함

3. 예방

- 물과 음식물은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 우유 및 유제품은 반드시 멸균한 것을 섭취
-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외출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
- 바닷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해산물, 회 등 날 생선 먹지 않기

9. [식중독]

1. 증상 및 특징

- 병원소 : 사람
- 전파경로 : 실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도록 세균증식이 될 때까지 수 시간 이상 걸리며 모든 식품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잠복기 : 1~5시간
- 임상증상 : 갑자기 심한 구역, 구토, 산통성 복통, 발한, 허탈, 쇠약감 등

2. 치료

- 전해질과 수분공급 및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

3. 예방

- 식품 제조에서 소비까지 시간을 단축하고(실온에서 최장 4시간 이내),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2시간 이상

보존해야 할 경우에는 60℃이상 혹은 10℃ 이하, 가능하면 4℃ 이하에서 보존

- 조리 종사자 교육 : 철저한 위생, 식품의 적정온도 보관, 손톱 청결, 상처가 있는 피부, 눈, 코와 식품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지도
- 행주나 수세미는 반드시 삶아서 소독하여 사용
- 개수대 닦는 수세미로 그릇이나 조리도구 닦지 않음

10. [A형 간염]

1. 증상 및 특징

- 환자를 통해 가족 또는 친척에게 전파되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군인, 고아원, 탁아소에서 집단 발생하며, 증상발현 2주 전부터 황달 발생 후 2주까지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왕성함
- 전파경로 :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환자의 대변을 통한 경구 감염,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 중독자),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으로 전파됨
- 잠복기 : 15~45일
- 임상증상 : 발열, 식욕감퇴, 구역, 구토, 쇠약감, 복통, 설사등 다른 바이러스 간염과 유사하며 소아는 거의 증상이 없는 불현성 감염을 보이거나, 연령이 높아 질수록 증상이 심해짐

2. 치료 :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토록 하며 고단백 식이요법 병행

3. 예방

- 손씻기, 식품 및 식품 취급자 위생관리
- 고위험군 예방 접종
 - 유행지역으로의 여행자 및 장기 체류자
 - 주기적으로 A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소아
 - 남자 동성 연애자나 불법 약물 남용자
 - 만성 간질환 환자 및 혈우병 환자
- 수저, 식기, 컵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찌개류 등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개인용 접시에 떠서 먹을 것

11. [파상풍]

1. 증상 및 특징

- 전파경로 : 흙, 먼지, 동물의 대변 등에 포함된 파상풍의 포자가 피부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킴
- 잠복기 : 1일~수개월(평균3~21일)
- 임상증상
 - 전신파상풍 : 입 주위 근육 수축으로 입을 벌리기 곤란한 증상이 먼저 나타나며 경직에 따른 통증을 동반함. 복부강직과 목과 등이 경직되어 활모양으로 휘는 후궁반장 및 호흡근육 경직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
 - 국소파상풍 : 아포가 생성된 부위의 국소 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하며 저절로 소실되기도 함.

2. 치료

-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조용하고, 조명이 밝지 않으며, 외부자극을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 근육주사
-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생제의 사용과 상처치료

3. 예방

- 흙, 녹슨 못, 가위, 나뭇가지 등에 의해 상처가 난 경우 즉시 피를 짜내거나 흐르는 찬물에 상처를 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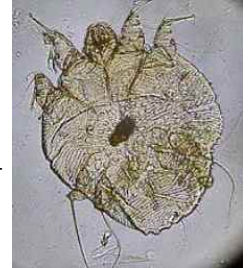
12. [옴]

1. 증상 및 특징

○ 정의

옴 진드기(*Sarcoptes scabiei* var. *hominis*)에 의한 피부 감염증

- 옴 진드기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조직에 침입해 피부병을 유발)
- 암컷이 사람이나 동물의 피하조직에 침입해 하루 2~3mm씩, 대략 수 cm에 이르는 굴을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



○ 병원체

- 옴 진드기(*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 절지동물문(Phylum Arthropoda), 거미아강 (Subclass Arachnida), 무기문목(Order Astigmata), 옴진드기과(Family Sarcoptidae)에 속함
 - 옴진드기는 인간을 1차 숙주로 점차 가축을 통하여 야생동물에 까지 전파되어 사람 외에 40여종의 동물을 숙주로 기생
 - 사람에 기생하는 종과 가축 등 다른 동물에 기생하는 종이 다름
 - * 사람 옴 진드기는 흔히 옴 진드기(*S. scabiei*)로 표기
 - 한국에서 보고된 종은 3종
 - * 사람옴진드기(*Sarcoptes scabiei scabiei*)
 - * 개옴진드기(*S. canis*)
 - * 돼지옴진드기(*S. scabiei suis*)

○ 증상

1) 일반옴

가) 특징적인 증상은 야간에 악화되는 가려움과 발진임

- 야간에 각질층 내에 굴을 만들고 이때 분비되는 소화액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여 가려움증 및 피부병변이 발생
- 감염 부위를 계속 긁으면 감염된 상처가 생김

나) 병소의 분포는 굴의 분포와 일치하지 않음

- 손가락 사이, 손목의 굴측, 남성의 성기 주변, 발가락, 발목 및 여성의 가슴, 겨드랑이, 허리 등 유아나 소아 또는 어르신에서는 발바닥, 손바닥에서도 흔히 발견
- 구진, 소포, 습진반, 결절 등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병변이 발생

다) 호발연령층은 최근 노인 연령층으로,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순가려움증, 건성습진 등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이 주의가 필요

라) 합병증으로는 포도상구균, 베타용혈성연쇄구균 등에 의해 이차 세균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2) 딱지옴(Crusted scabies, 혹은 노르웨이옴(Norwegian scabies))

가) 특징

- 손과 손목, 발, 팔꿈치 펴쪽 부위, 두피, 귀 및 손톱 밑에 과다각화증 현상을 보이는 건선모양 성기 및 볼기에 심한 인 설 및 균열 병변
- 어르신 환자에서는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으로 딱지옴이 발생
- 딱지옴 환자 중 50%는 가려움증이 전혀 없으며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를 잘 관찰하면 25%에서 굴을 발견

나) 전파 양상

- 직접전파 : 환자와의 직접 접촉
- 간접전파 :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하여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옮진드기를 전파

다) 동반되는 질환

- 다운증후군, 나병, 정신장애, 신경 장애, 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국소스테로이드제 과다사용 등
- * 이런 질환들에서는 대개 가려움증의 유발이 억제됨

2. 예방

- 개인 위생
 - 환자와 접촉을 피함
 - 같이 사는 가족이나 구성원 등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 잠복기가 4~6주로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옮을 옮길 수 있기 때문
- 보건교육을 강화
-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을 개선
 - 매트리스 및 가구 등의 품목은 세척할 필요가 없음
 - 폭신한 또는 겉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철저하게 진공 청소기로 깨끗이 청소

3. 관리

- 감염환자의 내복 등을 포함한 모든 옷, 침구, 수건은 항염진드기제제를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 한 후 뜨거운 물(50~60℃ 이상)로 10~20분간 세탁하고 난 후 3일간 사용하지 않음
- *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 48~72시간 동안 살 수 있음
- 세탁할 수 없는 의류는 3일 이상 며칠 동안 보관한 후에 재사용

13. [코로나]

1. 증상 및 특징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2.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내부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3. 관리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1. 수급자 및 종사자들이 건강생활 습관을 갖도록 평상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보건교육 시간 이외에도 유인물, 보건신문, 게시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절히 교육한다.
3. 야외활동·단체활동(프로그램) 등 장기요양기관의 행사별로 계절과 연관 지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한다.
 - 종사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사전교육
 - 개인위생 준수 및 기침예절
 -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바로 병·의원 진료(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활용)
 - 부득이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기관내 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급자를 직접 접촉 (1m 이내의 거리에서 대화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만남)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함
 - 감염병 이환 시 바로 간호사 및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격리조치
 - * 종사자의 수급자 관리 및 지도 내용
 - 계절별 감염병에 대한 감염경로 및 예방법
 -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감염병 환자 파악 및 신고절차
 -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생활지도
 - 추가환자 발생에 대한 감시요령
 - 기관내 방역관리

- 수급자의 종사자 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 * 기관 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감염병 관리
-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외부인의 출입 자제
- 외부인이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바로 간호사와 상담

■ 감염병 예방활동

1. 일반 원칙

- 감염질환은 증상 시작 직전이나 시작할 무렵 가장 높은 전염성을 보이므로 증상이 있는 수급자를 조기 격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감염성 질환 증상을 보이는 수급자는 즉시 격리시키고 보건소에 연락한다. 또한 병원진료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 이후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접촉한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발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므로 반복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손 씻기

-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먹여주기 전
 - 식탁 차리기 전
 - 음식물을 조리하기 전
 - 기침, 재채기, 콧물 닦기 등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된 후
 -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 눈에 보이게 손이 더러워졌을 때
 - 환자와 접촉 후, 환자의 옷을 만진 후
 - 동물 혹은 동물의 분비물과 접촉한 후, 애완동물 집을 청소한 후
-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 * 비누를 사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충분히 적신다.
 - * 충분한 시간(30초이상)동안 비누와 함께 손을 비빈다.
 - * 손을 씻을 때는 손목,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가락사이 및 손톱 밑을 철저히 씻는다.
 - * 손을 씻은 후에는 일회용 수건으로 닦고 말린다.
 -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씻기
 - * 물과 비누의 사용이 어렵고 눈에 보일 정도의 오염물이 묻어있지 않으면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 * 소독제의 알코올 농도가 60~90% 일 때 최적의 살균력을 보인다.
 - * 한손바닥에 적정량(보통 1~3cc)의 손소독제를 던다.
 - * 손과 손가락 표면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 소독제가 마를때까지 문지른다.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예시 >

		
0. 손에 물을 묻힌다.	1. 충분한 양의 비누/소독비누를 받는다.	2.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문지른다
		
3. 손바닥으로 손등을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4. 손가락을 깎지 끼고 손바닥을 문지른다.	5. 손을 서로 맞잡고 손가락 뒷면을 손바닥에 문지른다
		
6. 엄지를 감아 쥐고 회전하듯이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7. 손톱을 손바닥에 마찰하듯이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8. 물로 손을 씻어낸다.
		
9. 일회용 타올을 이용하여 손을 닦는다.	10. 타올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근다.	깨끗한 손이 준비되었다.

<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씻기 예시 >



3. 기침 예절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거나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 제제를 사용하여 손을 닦는다.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호흡기 증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므로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실내 환경 관리

○ 침상 관리

- 어르신들은 호흡기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요양실의 실내청소를 할 때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어르신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습관에 맞춰져 있으므로 반드시 어르신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정리·정돈한다.
- 외상 어르신의 침상은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기 쉬워 오염될 기회가 많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침상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은 앞치마나 비닐, 수건 등을 깔아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 감염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침구도 감염경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어르신의 동의를 구한 후 3~4시간마다 창문이나 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 화장실 관리

-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다.
- 바닥은 물때나 미생물의 발생이 쉽고 미끄러우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독제와 솔을 이용하여 문질러서 닦아준다.
-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아 물때를 제거한다.
- 양변기나 세면대의 실리콘 띠에 생긴 검은 반점은 그 띠를 따라 화장실 휴지를 꼬아 얹고 그 위에 염소계 표백제(락스류)를 뿌리고 1~2시간 후에 물로 씻어 없앤다.
- 배수구는 뚜껑을 들어내 오물을 걷어내고 뚜껑을 깨끗한 솔로 씻은 후 배수구 속까지 문질러 물때를 씻어낸 후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 화장실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한다.

○ 쓰레기 관리

- 어르신의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 어르신의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 어르신의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
- 사용한 물품들은 철저히 세탁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는다.
-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 배설물(대소변, 농(고름),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 어르신이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대소변, 농(고름), 혈액 등)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고 필요 시 소독한다.
- 종사자는 장갑을 사용하더라도 장갑을 벗은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5. 주방 위생관리

○ 음식물 위생관리

-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청결, 조리음식의 신속 섭취, 냉각 또는 가열처리 철저 등의 3대 원칙을 준수한다.
- 음식물 조리
 - *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 이상에서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 *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장염, 식중독 등의 감염증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 * 조리된 음식은 덮개를 씌워 2차 오염을 방지한다. 급식물품의 전달 조리는 가능한 제한하며, 매 조리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밥, 반찬류, 국 등을 보존식 (5℃ 이하 상태로 72시간, 전용용기 사용, 100g 정도, 전용냉장고에 3일간) 으로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 *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한다.
 - * 냉장온도는 10℃ 이하 냉동온도는 -18℃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 *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 마시는 물 관리
 - * 정수기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 그릇 및 식기류 관리
 - * 물에 불린 다음 수세미나 스펀지 등에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여 닦는다.
 - * 세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행군다
 - *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쌓아 놓고, 물기가 마른 후 정리한다.
 - * 모든 식기류는 바닥에 놔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유리류의 그릇은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그릇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 식기는 세척하여 건조한다. 매번 소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습도가 높은 기간이나 감염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독한다.
- 냉장고 관리
 - * 야채박스나 선반 등을 꺼내어 주방용 세정제로 닦는다.
 - * 도어패킹은 헨 칫솔에 세제를 묻혀 꼼꼼히 닦고,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닦아낸 후 끝으로 알코올을 솜에 묻혀 닦는다.
 - *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형겅에 묻혀 닦아주면 얼룩이 없어진다.
 - *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항상 내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 숯이나 탄 빵조각은 좋은 탈취제로 냉장고 한쪽에 놓아두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 * 음식이나 식재료는 비닐로 씌우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한다.
 - *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는다(뜨거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온도를 상승시켜 나머지 음식을 상하게 한다).
 - * 냉동 음식을 해동하는 동안 세균 증식이 급격히 발생하므로 냉장고에서 해동하고 다시 냉동하지 않도록 한다.
 - * 냉장고 내에서도 세균이 증식하므로 섭취 전 세척하거나 씻도록 한다.
 - *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유통기간을 반드시 준수한다.
 - * 너무 많은 음식을 냉장 및 냉동고에 보관하면 냉각공기 순환에 방해가 되어 음식이 상하므로 공기가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보관한다.

6. 수급자 관리

○ 피부 관리

-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히 유지한다.
- 찰과상이 있을 경우 감염되기 쉬우므로 찰과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이나 목욕 등의 활동 시 반지나 팔찌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톱을 짧고 둥글게 깎는다.
- 욕창 예방을 위하여 시트는 주름 없이 잘 펴고, 와상 어르신의 경우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한다

○ 경구 영양공급 관리

- 음식 준비 전과 음식을 주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 어르신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어르신의 손을 씻긴다.
-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여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하여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 후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후 30분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한다.
- 식사 후 어르신 및 종사자는 손을 씻는다.
- 매 식사 후 칫솔질을 한다.

○ 약품 관리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캡슐에 들어 있는 약은 미리 까놓지 않고 복용 직전에 까서 복용한다.
- 시럽의 경우 스포이드 또는 주사기로 정확한 용량을 덜어서 복용시키고, 시럽통에 침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 꺼낸 시럽은 다시 용기에 넣지 않는다.
-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은 복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 장기간 사용하는 약은 개봉일을 기록한다.
- 개봉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색깔, 냄새 등이 변질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